

지배구조 내부규범

2015. 2. 26 제정
2016.3.24 개정(1)
2016.7.21 개정(2)
2017.2.8 개정(3)
2017.3.23 개정(4)
2018.2.20 개정(5)
2018.5.17 개정(6)
2018.8.16 개정(7)
2018.12.12 개정(8)
2019.3.27 개정(9)
2019.12.13 개정(10)
2020.5.21 개정(11)
2021.3.25 개정(12)
2022.3.2 개정(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
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
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룹”이라 함은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을 말한다.
2. “자회사등”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
업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
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
행”이라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4. “상법상 회사”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상법」 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6.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7. “사외이사”란 「상법」 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8. “겸직 비상임이사”란 그룹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9.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사장·부사장·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및 자회사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0.12.17 개정) (2022.3.2 개정)
 10.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1. “이사회등”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12. “경영진”이란 임원중에서 사외이사과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3.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14. “성과보수”이란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를 의미한다.
 15.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67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6.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67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7. “준법감시인”이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절 이사회

제3조(이사회 구성)

- ①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창업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 ② 이사회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회 권한 및 책임)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2021.3.25 개정)
 6.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1.3.25 신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내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
 3.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④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 「결의사항 등」의 제·개정을 통해 권한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이사회는 연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2021.3.25 개정)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6. ESG전략위원회
7.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② 이사회내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중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2021.3.25 개정)
- ③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이사회내위원회는 연1회 해당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업무) (2021.3.25 개정)

- ① 회사는 대표이사 회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②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최종 회의시에는 사외이사 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며, 이 때는 사외이사 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2016.3.24 개정) (2019.3.27 개정)
- ③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2. 대표이사 회장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3.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4.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 ④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3항 제4호의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⑤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1조 (삭제) (2021.3.25 개정)

제1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이하 이 조에서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②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한다.
- ③ 감사위원 후보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1.3.25 개정)
-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및 외부감사인 해임요청 (2018.8.16 개정)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제13조(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2021.3.25 개정)

- ①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단, 사외이사 후보 최종 추천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가 개시되면 사외이사 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며, 이 경우 사외이사 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2018.5.17 개정)
- ②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③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제3호의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4조(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의사결정 사항
9. 그 밖에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보수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 이사로 한다.
- ② 보수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위험관리위원회 소속이사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자회사의 연간 성과평가 결정에 관한 사항 (2018.12.12 개정)
 5. 회사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
 6.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보수 체계와 관련된 사항
- ④ 보수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21.3.25 개정)

제17조(ESG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2021.3.25 개정)

- ① ESG전략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ESG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2. 기후변화대응을 포함한 친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범/정책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속가능경영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내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 ① 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②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21.3.25 개정)
- ③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0.5.21 개정)
 1.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2.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4.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5.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 ④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제3항 제4호의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절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

제20조(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등의 책임)

- ① 이사회등은 자회사등이 조직구조, 영업 및 관련 위험관리에 적합한 지배구조 정책과 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이사회등은 자회사등의 이사회에 대하여 독립적인 법률상 및 지배구조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회사등에 대한 적절한 감독활동을 수행한다.

③ 이사회등은 자회사등이 노출하고 있는 위험의 성격, 규모, 복잡성을 감안하여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수립하고 위험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제21조(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등의 권한)

① 제4조의 권한에 추가하여 이사회등은 자회사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할 수 있다.

1. 자회사등의 경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자회사등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회사등의 지배구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의 수립, 평가 및 상시적인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후보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자회사등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5.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자회사등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원·사외이사후보추천원칙, 보수원칙, 보수정책 등 자회사등을 전체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의사항을 자회사등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자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 및 최고경영자

제1절 이사

제22조(이사의 선임 및 퇴임)

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21.3.25 개정)

- ② 사내이사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21.3.25 개정)
- ③ 비상임이사 또는 대표이사 회장이 아닌 사내이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21.3.25 개정)
- ④ 주주총회는 이사가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사임, 임기만료,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임한다

제23조(이사의 자격요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자회사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 ③ 사내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44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24조(이사 후보 추천절차)

- ①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내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내위원회는 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한다. (2021.3.25 개정)
- ④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2021.3.25 개정)

제25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2021.3.25 개정)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제23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6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1. 사외이사 :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
 2.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 : 3년 이내
-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③ 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제30조에 의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해당년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해당년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8조(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이사의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다.
- ② 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의 참여에 할애한다.
- ③ 이사는 재임기간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및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⑤ 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부담액의 최대 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
-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자회사등 및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 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제30조(이사에 대한 평가)

-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④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는 본 규범 제50조를 따른다.
- ⑤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이사의 보수)

-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체계를 수립한다.
-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수당, 직책수당, 회의 수당, 참가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사내이사의 보수는 본 규범 제51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운영)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지원부서로서 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한다. (2021.3.25 개정)
- ② 이사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1.3.25 개정)
 - 1.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 지원
 - 3.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이사회사무국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제2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2021.3.25 개정)

제33조(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이사가 회사와 자회사등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와 자회사등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한다.
- ② 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 등의 회의자료를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8.5.17 개정)

제34조(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이사가 회사와 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제35조(이사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신입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 다른 금융기관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임된 경우
- ② 회사는 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

제36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입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이사회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제3호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시기를 정한다.
- ④ 이사회는 제3항의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 ⑤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 ⑥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규정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37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 ① 회사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를 둔다. (2019.3.27 개정) (2021.3.25 개정)
- ②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19.3.27 개정)
 -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 지원부서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한다. (2019.3.27 개정) (2021.3.25 개정)

제38조(최고경영자의 자격)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한다.

제39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①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 (2021.3.25 개정)
- ②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한다. (2021.3.25 개정)
- ③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제40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2021.3.25 개정)

-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3. 최고경영자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1조(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회사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 한다.

제42조(적용범위)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는 본 규범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 경우 “이사회”를 “지주회사 이사회”로, “최고경영자”를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로, “경영승계”를 “자회사등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로 본다. (2020.5.21 개정)

제43조(경영의사결정 체계)

- ① 그룹의 전략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하여 그룹경영회의를 설치한다.
- ② 그룹경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5조제5항에 따른 주력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임직원
 3. 위원장이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때마다 지명하는 사람
- ③ 그룹경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사 및 자회사등의 연간 사업계획
 2. 회사 및 자회사등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등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사 및 자회사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
 4. 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위원장이 자회사등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그룹경영회의는 제3항에 따른 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제74조제3항에 따른 그룹리스크협의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룹경영회의는 상정 안건명과 주요 논의내용을 기록한다.
- ⑥ 그 밖에 그룹경영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경영진에 관한 사항

제1절 경영진의 자격요건

제44조 (경영진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진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대표이사 회장은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 회장이 아닌 경영진은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통해 회사의 건전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절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제45조 (권한과 책임)

- ① 대표이사 회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 1.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의 운영(회장이 이사회의장으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 2. 주주, 관련기관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의사 교류 원활화를 위한 역할
 - 3. 회사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이해관계인의 조정 역할
 - 4.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역할
- ② 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경영진은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 ③ 경영진은 이사회와 이사회내의 각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절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46조 (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

- ① 대표이사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21.3.25 개정)
- ② 대표이사 회장 아닌 경영진 중 전략기획·재무관리 담당 경영진,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21.3.25 개정)
- ③ 이사회는 자질, 업적, 역량 등을 감안하여 경영진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경영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아닌 경영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경영진 직위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2022.3.2 개정)
 - 1. 법규, 정관, 내규,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회사와 경영진간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서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47조(직무대행 등)

- ① 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3.25 개정)
- ② 전략기획, 재무기획,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3.25 개정)

- ③ 제1,2항 외의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정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임기)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따르며, 대표이사 회장 아닌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2022.3.2 개정)

제4절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49조 (경영진 등에 대한 교육 및 평가 활용)

- ① 회사는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하여 전략, 리더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경영진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경영진 선임 시 고려한다.

제5절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50조(경영진의 성과평가)

- ①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담당업무 성과 외에 회사 등 조직 단위의 업무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경영진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이나 재선임 또는 해임시에 활용한다.

제51조(경영진의 보수)

- ① 경영진의 보수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경영진의 보수는 연봉(기본급, 단기성과급)과 활동수당으로 하며, 보수와는 별도로 성과연동형 장기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52조(기본원칙)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제53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회사 및 자회사등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54조(감사보조조직)

-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팀을 둔다.
- ② 감사팀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운영한다.
- ④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이사회에 대한 보고)

- ①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실시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한다.

제6장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제56조(기본원칙)

- ①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보수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보수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으로 회사 및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③ 회사는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성과 연계 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임직원의 보수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제57조(보수위원회 활동의 서류 보존) 회사는 보수위원회의 설치·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감시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한다.

제58조(보수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 ①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수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9조(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 중 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한다.
- ②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상당부분을 성과보수로 하고,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한 성과에 따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진(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서 같다),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보수제도를 설계한다.

제60조(이연지급)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 지급한다. 다만,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2018.2.20 개정)
- ② 회사는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한다. (2018.2.20 개정)
- ③ 이연지급시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한다. (2018.2.20 개정)

④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2018.2.20 신설)

제61조(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부여시점 이후 최소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보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2018.2.20 신설)

제62조(현금보수 지급 등)

- ① 이연지급된 보수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수로 지급될 수 있다.
- ② 지급확정기간 중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을 재무성과나 손실규모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63조(보수체계 재조정) 회사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수체계를 건전한 리스크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할 수 있다.

제64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수의 제한)

- ① 회사는 보장형 상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 ② 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수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리스크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 임직원들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을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제66조(성과평가 지표)

- ① 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 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며, 계량화 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1.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반영
 2.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요인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지표를 반영
 3.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반영
 4. 회사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수 제도를 활용
 5.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영

제7장 공시

제67조(정기공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 등의 장이 정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021.3.25 개정)
 2.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3.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2021.3.25 개정)
 - 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
 - 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 사외이사 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 마. 법에 따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차.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 카. 이사회사무국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타.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 관련 사항
-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의 제공 현황
 - 카. 회사와 사외이사등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5.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021.3.25 개정)
 - 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나.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 다.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6.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021.3.25 개정)
 - 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대표이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등 대표이사 회장 선임기준
 - 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와 제안자와의 관계
 - 마. 법에 따른 대표이사 회장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이유 및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의 경력
 - 7.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 8.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 9.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한 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 10.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작성 기준에 따른다.
-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 체계의 주요 특성
 - 3.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수를 포함한다)
 - 4.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 5.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 6.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 7. 회계연도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기준 최고 지급액
 - 8. 회계연도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 ③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 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해당 회사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수는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 이 규범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68조(수시공시)

-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제18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한다.

제69조(주주총회)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전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70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8장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등

제71조(내부통제체제)

- ①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룹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72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 ③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3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74조(리스크관리체제)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룹리스크관리 규정에서 정한다.
- ③ 회사는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리스크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그룹리스크협의회를 설치한다.
- ④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위원장은 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하고 위원의 구성은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을 따른다. (2020.5.21 개정)
- ⑤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그룹경영회의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⑥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5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
- ③ 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6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77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상당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경영 업무
4. 자회사등의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8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한다.
- ③ 회사 및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범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한캐피탈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날부터 이 규범 제42조를 적용한다.

③ 제9조제8호 및 제17조의 시행일은 2015.3.25 로 한다.

제2조(적용례 등) ①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 규범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

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규범 시행일 현재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29조제7항제1호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규정) 규정의 일체 내용이 본 규범으로 이동 및 변경된 「사외이사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1)

- 1.(시행일) 이 규범은 2016. 3.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이 규범은 2016.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이 규범은 2017. 2. 8부터 시행한다.
2. 제26조제4항의 시행일은 제16기 정기주주총회일로 한다.

부 칙(4)

- 1.(시행일) 이 규범은 2018.2.20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제19조 제3항은 제주은행의 경우 2018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변경한 때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5)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8. 5.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8.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8. 12.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9. 3.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9. 1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 (시행일) 이 규범은 2020. 5.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 (시행일) 이 규범은 2021. 3. 25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위원회의 역할이 이사회로 이동한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과 다른 위원회와 통합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은 폐지한다.

부 칙(12)

1. (시행일) 이 규범은 2022. 3. 2부터 시행한다.